

제 호

학력인정시설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위치:

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·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()교육감

직인

주: 위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